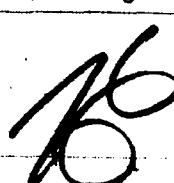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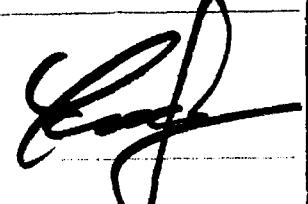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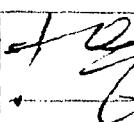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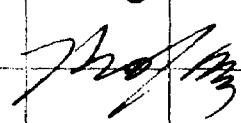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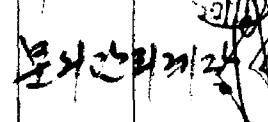


고시

기안용지

1126
고시제 16호

분류기호 문서번호	공보 1080-	(전화번호 75-7894)	전결규정	조항
처리기관	제 1 부 시장		시	장
시행일자				
보존년한				
보	공보실장		협	법부과장 (고시안찰재)
조	문화재장			시민과장
기				
관				
기안책임자	김영태	73. 1.	조	
경유수신참조	각 안찰조	발신	통제	검열 1973.1.2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제목	서울특별시 시장 문화재 지정			
부록 1 안내 (내부결재)				
1. 서울특별시 지방 문화재 보호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73. 1.				
17 14:30 개최한 서울특별시 지방 문화재 위원회의 차문을 받아 다음 문				
화재를 서울특별시 시장 문화재로 지정하고 동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별첨 안과 같이 고시 코자 합니다.				
가. 지정 대상 문화재				
지정번호	송. 블.	문화. 책. 명.	소. 재. 지.	

0201-1-8A

152

190mm×262mm 백상지 40g/m²

1969. 11. 10. 승인

제 16호	사적	선농당	동대문구 용두동 사대내
제 17호	천연기념물	잡실리 뽕나무	영등포구 잠원동
제 18호	"	화양동 느티나무	성동구 화양동
제 19호	민속자료	서빙고 부군당	용산구 서빙고동
제 20호	"	보현산신각	서대문구 평창동
제 21호	"	인왕산선바위	서대문구 인왕산봉

첨부 : 1) 고시안 첨부.

2) 지정자료 조사 보고서 1부.

3) 문화재 위원회 회의록 1부. 끝.

제 2 안 "

수신 문화공보부장관

참조 문화재관리국장

제목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 보고

1.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1. 17 서울

특별시 지방문화재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아래 문화재 (6점)을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로 지정 하였기 보고합니다.

가.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 목록

(시행시 원안 이기시해). 끝.

제 3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 기방문화재 지정 통보

1. 다음 문화재는 지난 1. 17자로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로 지정 되었기

통보 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관리 보호에 유의 할것.

첨부 : 지정 문화재 목록 1부. 끝

수신처 : 동대문구청장, 서대문구청장, 용산구청장, 영등포구청장

"제 4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지정서 교부

1. 귀하가 현재 관리 보호하고 있는 문화재 (설농당 서빙고부군당, 평창동 보현산신각)는 당시 향토 문화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기티 보존되어야 할것으로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 지난 1. 17자로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로 지정하고 동 조례 제9조에 의거 귀하께 지방문화재 지정서를 교부 코자 하오니 2. 15까지 다시 공보실로 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수신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장

용산구 서빙고동 장준오

한신부동산주식회사 사장(종로구 경운동 38 김학원)

고시안심사 1973.1.23 제 16 호
 삼성사 향재지정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 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방
 문화재를 지정하고 동조례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 목록

지정번호	종 별	문화재 명	소재지	지정 일
제 16 호	사적	선농당	동대문구 용두동 138	73. 1. 17
제 17 호	천연기념물	잠실리 뽕나무	영등포구 잠원동	"
제 18 호	"	화양동 느티나무	성동구 화양동	"
제 19 호	민속자료	서빙고 부근당	용산구 서빙고동	"
제 20 호	"	평창동 보현산진가	서대문구 평창동	"
제 21 호	"	인왕산선바위	서대문구 인왕산봉	"

1973. 1. 17

서울특별시장

한국